

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황인구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637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7월 2일
발 의 자 : 황인구 의원 (1명)
찬 성 자 : 김수규·양민규·채유미
조상호·최기찬·권순선
전병주·김 경·임만균
이호대·봉양순 의원 (11명)

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중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전출하여 조성되는 수입은 실질적으로 “전출금”이 아닌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므로 동 기금의 조성재원의 명칭을 “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”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기금의 조성재원 중 “교육청의 출연금”을 “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”으로 함(안 제14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2항 중 “교육청의 출연금”을 “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4조 (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와 재원 조성) ① (생 략) ② 기금의 재원은 <u>교육청의 출연금</u>,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, 그 밖에 수입금으로 조성한다.</p>	<p>제14조 (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와 재원 조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기금의 재원은 <u>교육비특별회계</u> <u>전입금</u>,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, 그 밖에 수입금으로 조성한다.</p>